



#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2019. 4

## 일러두기

본 사례집에 수록된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의 법리 적용 및 결론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법령명 약어

본 사례집에서는 주요 법령 명을 아래의 약어로 표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628호, 2018.6.16., 일부개정] : 정보통신망법

### ■ 용어 설명

본 사례집에서는 주요 법령 명을 아래의 약어로 표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의 차이로 관련 용어('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다르게 사용되나, 독자의 혼란이 발생될 수 있어 「답변」에서 용어는 아래와 같이 통일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 '정보주체'

### ■ 개인정보 보호법령 주요 개정 연혁 안내

- (법률)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시행 2014.8.7.]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 부과
- (시행령)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시행 2016. 7. 25.]
  - 법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개인정보 범죄 처벌 강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 (법률)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 등[시행 2016. 9. 30.]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강화
  - 민감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 (법률)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중요 내용의 명확한 표시[시행 2017. 10. 19.]
  -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등의 표시 방법을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 CONTENTS

---

<b>제1장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개요</b>	<b>5</b>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6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6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업무처리 절차	12
2.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16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16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18

---

<b>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b>	<b>21</b>
1. 개인정보의 수집	22
1-1 정책홍보 퀴즈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	22
1-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4
1-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25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27
1-5 회원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29
1-6 관광지 주변 숙박업체의 홍보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31
2.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33
2-1 결혼사진업체의 홍보 목적 고객 결혼사진 이용	33
2-2 법률사무소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35
2-3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36
2-4 성형 전·후 사진의 병원 홍보 목적 이용	38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9
3-1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39
3-2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함 파일 노출	41
3-3 입사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43
3-4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노출	46
3-5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	47
3-6 SNS 채팅방 개인정보 노출	49
3-7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51
3-8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53
3-9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54

4. 개인정보의 파기	56
4-1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56
4-2 홈페이지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58
4-3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61
5. 정보주체의 권리	63
5-1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63
5-2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66
5-3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70
5-4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71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75
6-1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75
6-2 티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76
6-3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77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79
7-1 개인의 임의적인 공개된 장소 CCTV 설치·운영	79
7-2 학원 내 다수의 CCTV설치시 안내판 설치	80
7-3 재건축 단지 내 CCTV 설치·운영	81
7-4 CCTV 설치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84
8. 기 타	84
8-1 타인 계정 도용을 통한 메신저 피싱	84
8-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명의 도용	86
8-3 SNS 계정 도용을 통한 성인물 게시	87

# 제1장

##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개요

---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2.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현황

# 제1장

##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개요

###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설립 근거 및 조사 권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③~⑦ <생략>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시행령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시행령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5.12.30.>

② < 생 략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 생 략 >

#### 시행령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2.30, 2017.7.26>

1.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② < 생략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31.] [법률 제15628호, 2018.6.12. 일부개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 1 ~ 8. < 생략 >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 10 ~ 22. < 생략 >

④ ~ ⑦ < 생략 >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7.7.26>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생략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6.3.22, 2017.7.26>

④ ~ ⑤ < 생략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적 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⑦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⑨ ~ ⑪ < 생략 >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3.29, 2013.3.23, 2017.7.26>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전문개정 2008.6.13.]

**시행령 제6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①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8>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 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 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2011.9.29>

**시행령 제70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 ③ < 생략 >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1.9.29, 2012.8.17, 2014.11.28〉

1.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⑤ < 생 략 >

**시행령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처리 절차

### ① 신고·상담 신청 대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 및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신고·상담 신청 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전화로 신고내용을 1차 접수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인 터 넷 : <http://privacy.kisa.or.kr>(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전자우편 : 118@kisa.or.kr, privacyclean@kisa.or.kr
- 우 편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③ 처리절차

#### ◆ 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 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 ◆ 신고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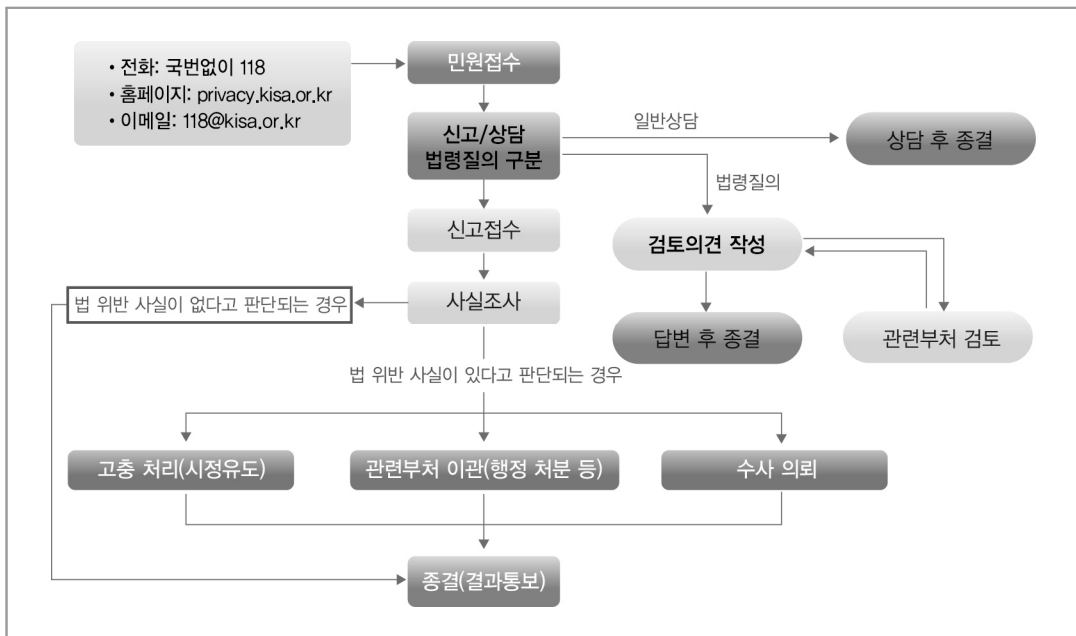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피신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 행정처분 의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도



#### ④ 개인정보침해 관련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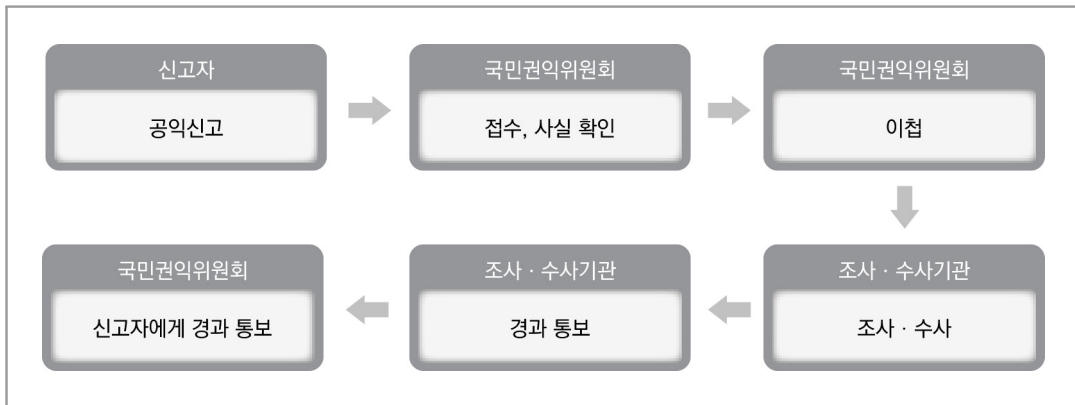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 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로, 개인정보침해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면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등입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절차



#### ◆ 공익신고 상담 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코너

전 화 : 국번없이 110 또는 국번없이 1398

## 2.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현황

### 가.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개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이고, 이는 2017년도 총 접수건수 105,122건에 비해 56%가 증가하였습니다. 작년과 대비하여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 운동 문자메시지 및 메신저 피싱 등에 대해 많은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 | 연도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신고	2,058	2,347	2,992	2,316	1,559	1,249	1,325
상담	164,743	175,389	155,908	149,835	96,651	103,873	163,172
계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105,122	164,497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접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1만 1천여 건(약67%)이고, 신용정보 관련 문의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외 관련 건이 3만 7천여 건(약 22%)으로 두 유형이 전체 89%를 차지하며 2017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유형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접수 유형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인정보 수집 요건	3,507	2,634	3,923	2,442	2,568	1,876	2,764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명시 의무	396	84	268	65	54	69	11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847	1,139	1,200	868	390	681	553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2,196	1,988	2,242	3,585	3,141	3,881	6,457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등	941	1,022	1,036	857	622	484	425
개인정보 처리 위탁	125	44	40	22	25	73	141
영업 양도·양수	44	47	54	41	41	64	10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48	51	39	48	123	165	10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855	4,518	7,404	4,006	2,731	1,768	2,549
개인정보 미파기	779	602	686	767	545	723	1,036
정보주체 권리 (열람, 정정요구 등)	717	674	792	957	855	862	1,149
열람·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660	510	352	381	286	266	364
아동 개인정보 수집	47	36	33	34	33	49	92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	139,724	129,103	83,126	77,598	48,557	63,189	111,483
타 법 관련 개인정보 사례	12,915	35,284	57,705	60,480	38,239	30,972	37,156
계	166,801	177,736	158,900	152,151	98,210	105,122	164,497

## 나.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세부 내용

2018년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상담 증가 ② 보이스 피싱, 인터넷 홈페이지 명의 도용,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침해 상담의 급증 ③ 개인간의 CCTV 설치·운영 관련 상담·신고의 지속적인 증가 ④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약 2만여 건의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 및 46만 건의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전송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불응,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불법스팸 신고(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해당되지 않음),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수신 거부 불응에 대해 개인정보침해라고 느끼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선거구민의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하는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상담 접수 유형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이 총111,483건이 접수되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 훼손·침해·도용’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침해행위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 인터넷 홈페이지 명의도용, 메신저 피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침해 수법을 다양화하며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은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관련 피해 구제와 예방법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이 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실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18.12월 기준)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메신저 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간의 CCTV 설치·운영 관련 개인정보침해 상담·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설치·운영이 대중화되면서 CCTV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침해에 관한 일반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재건축 지역이나 건축 공사 현장의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도로면 상가의 CCTV로 인한 보행자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등 현저히 사생활을 침해가 우려가 있는 장소의 CCTV 설치·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CTV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상의 목적을 벗어나 이웃 간 소송 등의 분쟁 입증자료 수집 목적이나 수사·행정기관의 단속 회피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CCTV 안내판 설치 등의 보호조치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상담·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상담·신고의 증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침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홈페이지 비밀번호의 전송·저장시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으로 관리자 페이지 노출,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게시 등입니다. 특히 입사 지원자의 불합격 통보를 다수의 지원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한꺼번에 발송함에 따라 불합격자의 이름·전자우편주소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1. 개인정보의 수집
2.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4. 개인정보의 파기
5. 정보주체의 권리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8. 기 타

## 제2장

#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

### 1. 개인정보의 수집

#### 1-1 정책홍보 퀴즈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수집

Q

정부기관에서 정책홍보 퀴즈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참여자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예,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합니다. 적법한 개인 정보 수집에 해당하나요?

A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i)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ii)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iii)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iv)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정부기관의 정책 홍보 퀴즈 이벤트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거나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4가지 고지사항을 알리고 이벤트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 취득 동의 여부만을 확인하고 고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리지 않았다면 적법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47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2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탕을 주며 학생들의 이름, 학년,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다음날 부모들에게 허락 없이 홍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아동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의미나 정보 수집목적의 진위를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로,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미성년자의 후견인(민법 제931조, 제932조) 등이 해당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13조제1항) 또한 아동으로부터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13조제2항)

이 사례의 경우 학생 이름이나 학년 등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는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할 수는 있으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부모의 휴대전화로 홍보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홍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위반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1-3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신 거부 불응



장문의 선거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냅니다.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i)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ii)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iii)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iv)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선거운동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의 항목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이 사례에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를 원하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상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 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③ 삭제 <2012. 1. 17.>

-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5조의4(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④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스팸 신고 여부

Q

같은 후보자가 번호만 바뀌어서 지속적으로 선거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일명 불법 스팸) 전송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i)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ii)「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 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 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전송 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법 스팸 메시지 전송 관련 신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 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1-5 회원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Q

A협회 정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니 주민등록번호, 직장정보, 학력, 병력, 경력 등을 요구하네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네요.

A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수집하면 해킹 등에 의해 언제든지 유출될 위험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집할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정회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의 근거로 수집하여야 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수집을 할 수 없고, 병력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1-6 관광지 주변 숙박업체의 홍보문자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Q** 관광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나서 몇 시간 후 인근 숙박업체에서 홍보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락처를 어떻게 얻었냐고 물었더니 차량에 주차문의를 위해 붙여 둔 연락처로 연락했다고 합니다.

**A** 개인정보를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i)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ii)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ii)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iv)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6조제4항)

이 사례의 경우 주차된 자동차에 붙어 있는 차량 운전자의 전화번호는 통상적으로 주차나 차량사고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연락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이지, 물건이나 서비스 홍보에 이용하라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체는 홍보문자 발송을 위해 차량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고, 홍보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2. 개인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 2-1 결혼사진업체의 홍보 목적 고객 결혼사진 이용

Q

결혼사진스튜디오에서 결혼사진이 잘 나와서 홍보자료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후 사진과 저의 실명까지 명시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호의로 승낙을 하였으나 실명까지 공개할 거라 생각하지 못해서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삭제를 하지 않네요.

A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업체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에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i)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ii)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iii)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iv)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당초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결혼사진스튜디오는 고객의 결혼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고객에게 구체적인 홍보 목적(예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 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예로, 결혼사진, 성명 등), 홍보 이용 기간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성명·결혼사진 등을 더 이상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9.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법률사무소의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Q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소장 작성을 위해 샘플 소장 및 진술서를 제공 받았는데 타인의 개인정보와 소송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법률사무소 소송의뢰인의 소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른 소송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소송대리 업무를 위해 알게 된 의뢰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누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상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을 위한 샘플문서는 의뢰인 등의 개인정보침해가 없도록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가상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호. 생략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2-3 영업양도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전**



A사업자가 운영하던 헬스장을 B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헬스장 회원 정보를 회원들의 동의 없이 양도하였습니다. 위법 아닌가요?



영업양도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전 관련 사실 등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i)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ii)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영업 양도자 또는 양수자등이 영업 양도·양수 등의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서면 등의 방법'이란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화, 인편 등과 같은 개별적 통지 방법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업 양도자 등이 과실 없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영업양도자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영업양수자 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자 등이 영업 양수·합병 당시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한다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자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의 통지)

-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2-4 성형 전·후 사진의 병원 홍보 목적 이용



성형외과에서 상담시 다른 환자들의 시술 전후 사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 사진도 아무런 언급 없이 찍더라고요. 물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구요. 제 사진도 다른 환자들에 보여질까 걱정되네요.



시술 관련 사진은 환자 본인의 치료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병원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은 영상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 가입·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 대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성형 전·후 사진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의료 정보의 일부로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병원은 성형 전·후

사진을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진료기록으로써 환자 진료 목적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진료 목적이 아닌 병원 홍보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4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3-1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 안내 메일로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전송이 되었습니다. 가입자 본인에게 안내메일을 보내는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전송해도 되는지요?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 비밀번호는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을 통해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합니다. 일방향 암호화는 저장된 값으로 원본 값을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 방법으로써, 인증검사 시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일방향 함수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 값과 시스템에 저장된 값을 비교하여 인증된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비밀번호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원본 값을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방향 암호화에 따라 저장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 ② (생략)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3-2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포함 파일 노출****Q**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반배정 게시글이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이 게시되어 있네요.

**A**

개인정보처리자는 노출된 개인정보 파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삭제하여야 하고, 해당 페이지 접속자 수 및 파일 다운로드 건수 등을 파악하여 노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파일이 노출되었다면 구글 검색 엔진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등의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 신고 등에 따른 사실 확인 및 보고 절차 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6. (생략)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3 입사지원자에 대한 불합격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 유출

**Q** 입사 지원을 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지 메일이 왔습니다. 받는 사람에 다수의 사람들의 이름과 전자우편주소가 함께 보내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가요?

**A** 불합격자의 이름과 전자우편주소를 알 수 있게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가 다수 불합격자가 다른 불합격자들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를 지득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전자우편을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불합격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i)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ii)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iii)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iv)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v)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통지의무와 더불어 통지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수인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 전자우편시스템의 개별발송기능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별 발송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3-4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자 개인정보 노출



정부기관의 정책이벤트 참여 후 참여완료 화면상의 「참여현황보기」 버튼이 있어 눌러 보니 이벤트 참여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보이네요.



이벤트 참여자 확인을 위해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스팸이나 보이스 피싱 등에 개인정보가 악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벤트 참여 확인을 위해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일부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별도의 인증절차(예로, 참여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설정 등)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5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

Q

보험 견적비교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하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살펴 보았는데 방침이 좀 이상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등의 특정 기간, 연락처 등의 숫자가 표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0년', '0개월'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대로 공개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신의 내부 방침을 정해 공개한 자율규제 장치의 일종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반에게 공개한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상 의무 이행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부 항목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부 항목〉

-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⑥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⑦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⑧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 보유기간,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부 내용이 '0'으로 표시되었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부내용이 '0'으로 표시된 것은 개인정보처리방침상의 세부 항목을 정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방식대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설령 홈페이지에 이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기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 3-6 SNS 채팅방 개인정보 노출

Q

승무원 학원 업체 직원이 1000여명의 某 항공사 지원자 명단 파일을 SNS 오픈 채팅방에 게시하여 지원자 개인정보 다수가 노출되었습니다.

A

개인정보처리자는 노출된 개인정보 파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SNS 오픈채팅방에 업로드하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삭제하여야 하고, 해당 페이지 접속자 수 및 파일 다운로드 건수 등을 파악하여 노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파일이 노출되었다면 구글 검색 엔진 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 검색엔진 업체 등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 등의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별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 신고 등에 따른 사실 확인 및 보고 절차 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17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접근 통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7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누설



저는 A통신사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번호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저의 변경전 번호를 사용하는데 자꾸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온다고 저의 변경전 번호를 현재 번호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제 현재 번호를 알아 연락했냐고 묻자 지인이 A통신사 모대리점에서 근무 하는데 그 분한테 연락처를 받았다고 하네요. 직원이 사적인 이유로 제 정보를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지인이 예전 휴대전화번호 이용자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자 불편 해소를 위해 통신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의 해당 고객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오는 경우 우선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 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T**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8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Q

2년 전에 모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최근에 해당 매장의 직원이었는데 새로운 매장에서 일하게 되어 휴대폰 개통 관리를 돕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전·현직 개인정보취급자에게도 개인정보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보호를 하고자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사 매장 직원이 이직하면서 전에 근무하였던 매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새로운 직장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매장에서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 있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금지)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 3-9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노출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다수인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정리된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네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URL이나 이용자 화면 소스코드, 임시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은

홈페이지 설계 및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설계 당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비공개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한이 미흡해 인증 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없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출된 정보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된다면 삭제하기 이전의 홈페이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검색엔진의 캐시페이지 삭제도 함께 요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6조(접근 통제)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개인정보 파기

### 4-1 진료기록의 무단 방치



쓰레기장에서 A의원의 환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의료기록 등)이 적힌 서류 뭉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을 파기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원본 또는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구분	보존기간
환자명부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수술기록	10년
검사소견기록	5년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간호기록부	5년
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분	3년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하드디스크, CD/DVD, USB메모리 등의 매체에 전자기(電磁氣)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다시 재생시킬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이와 같이 출력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의 의료기록이 포함된 진료기록부가 쓰레기장에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기록부의 경우 의료법상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문서는 물리적으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야 하고, 파쇄하지 않은 문서를 그대로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됩니다.

## 14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분(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4-2 홈페이지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



SNS소셜 로그인을 통해 몇 년 전에 이용하고 최근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보냈습니다.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경우 즉시 파기하거나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1년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미이용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의 온라인사이트에서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SNS 소셜로그인\*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별도의 미이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SNS소셜로그인이란? 기존 소셜SNS 플랫폼 아이디·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새로운 앱, 웹에 로그인 가능한 서비스. 이를 위해 소셜로그인 제공업체(기존 소셜SNS 플랫폼)는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여, 소셜 로그인 사용업체(새로운 앱, 웹)에 이용자 식별값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기는 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소셜SNS서비스 탈퇴시에도 제공된 개인정보는 파기되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있으므로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통지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 4-3 처방전 정보의 미파기

Q

약국에서 복약지시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이면지로 사용하고 있네요.

A

처방전은 관련 법령상의 보존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종료되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약품 투여와 관련된 진료에 관한 기록의 일종으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 세부사항이 표시되어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나타내어 현저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처방전은 관련 법령에서 2년 동안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출력물의 형태의 처방전은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하여 하고, 전자처방전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처방전 이면지를 복약지시서로 사용하여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의 보존기간 내 라면 보존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사법은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3.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 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약사법」 제51조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 사항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9.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기호

**약사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 5. 정보주체의 권리

### 5-1 어린이집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 같아 확인하려고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CCTV의 영상정보를 열람(사본 제공 포함)요청하였으나, 다른 아이들 등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합니다.



열람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열람 요구에 대한 열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육아보육법 및 그 시행령은 어린이집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관리, 그 영상정보의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육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i)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ii)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

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iii)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v)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세부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열람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li> <li>○ 열람조치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나 증표 확인</li> </ul>
열람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li> </ul>
열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li> </ul>
열람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li> </ul>
열람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li> <li>-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li> </ul> </li> <li>○ 거부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li> </ul> </li> </ul>

이 사례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열람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아이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유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으며, 열람시 다른 아이들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는 아동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열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5-2 쇼핑몰 주차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Q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CCTV에 촬영된 제 차량 관련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맞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열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 포함)를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해당 사물의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촬영된 차량 영상 정보는 자동차 등록 번호 등으로 차량 소유자를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열람 요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연기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되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또한 위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이외에 특히 개인영상정보는 i)범죄 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ii)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iii)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열람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4조제4항)

이 사례의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요청하는 영상에 다른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사유

만으로 열람을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열람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㉞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3 모바일앱에서 회원 탈퇴

Q

게임 모바일앱을 사용하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회원탈퇴를 하려고 하는 앱상 어디에도 회원탈퇴 기능이 없네요.

A

회원 탈퇴 방법은 회원 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철회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게임 모바일앱 이용을 위해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회원 탈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철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의 철회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원 탈퇴 방법은 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기가 PC이든 모바일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 가입을 하였다면 회원 탈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탈퇴 처리 기능 제공 또는 탈퇴 신청 연락처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 5-4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신고

Q

기업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인데 경찰로부터 우리 회사 고객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업체는 해킹 대상 정보의 고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담긴 USB 분실 등이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입니다.

##### 〈개인정보 유출 주요 유형〉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i)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ii)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iii)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iv)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v)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우선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통지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서면 등에 의한 개별 통지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통지 결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 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이용자 수를 불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IV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 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6-1 주차 차량 등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Q

OO병원 주차 차량 등록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A

주차 차량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예외사유〉

- ① 법률·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사례의 경우 병원의 주차 관리에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이 없다면 고객의 동의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6-2 티켓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Q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불법 예매가 의심되니 신분증과 아이디, 전화번호, 회원정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소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티켓 예매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문의하였으나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네요. 과도한 정보 수집 아닌가요?

A

법령상 처리 근거가 없는 한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티켓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불법 예매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는 불법 예매 여부 확인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 항목을 정하여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별도의 개인정보 제출 등의 절차는 정보주체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의 수집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해당될 수 있으니 불법 예매 확인을 위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본인확인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6-3 수강신청 환불을 위한 신분증 사본 요구**



학원에 수강신청을 하였다가 과목이 폐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환불신청을 하려고 하니 학원에서 신분증 사본을 요청을 합니다. 신분증 사본 요청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요?



법률 및 대통령령 등 처리 근거가 없는 한 학원비 환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학원비 환불 신청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위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고 않고 확인하는 것으로도 해당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

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14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 7.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7-1 개인의 임의적인 공개된 장소 CCTV 설치·운영

Q

전봇대에 개인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정보침해가 아닌가요?

A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 즉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 형태의 정보이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침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예외사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례의 경우 전봇대 주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CCTV 설치·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전봇대에 임의로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2 학원 내 다수의 CCTV설치시 안내판 설치**

**Q** 학원 각 강의실 복도마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복도마다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건가요?

**A** 학원 내 복도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i)설치 목적 및 장소, ii)촬영 범위 및 시간, iii)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iv)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학원 내 복도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마다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학원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14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 7-3 재건축 단지 내 CCTV 설치·운영

Q

재건축을 위해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지 내 300여개의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안내판도 하나도 없고, 이주를 하지 않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됩니다.

A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재건축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CCTV 등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구체적인 설치·운영 법령근거가 존재하므로 CCTV의 설치·운영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이주 주민이나 행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 관련 보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③ (생략)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7-4 CCTV 설치로 인한 타인의 사생활 침해

Q

앞집에서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저희 집 대문 쪽을 비추고 있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A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타인의 사적 공간을 비추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범죄예방대책을 위한 목적 등으로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목적에 맞게 CCTV 촬영 방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비추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④ 생략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8. 기타

### 8-1 타인 계정 도용을 통한 메신저 피싱

Q

제 동생이 메신저로 저한테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A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 해당 메신저서비스사업자에 계정 도용 신고 등을 하여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이란 타인의 메신저 계정 또는 포털사이트 계정을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 수법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지인의 이름·프로필 사진을 도용해 접근하여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1백만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메신저 계정이 메신저 피싱에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안 경우 우선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정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메신저서비스사업자에 계정 도용 신고 등을 하여 임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래의 예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하여 확인하기
-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 메신저 계정 로그인시 2단계 인증 설정하기
-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 관리하기
-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기
-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 및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 8-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명의 도용

Q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려고 하니, 이미 가입된 회원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제 정보를 이용해서 가입한 것 같습니다.

A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 삭제 또는 처리 정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 가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고충처리담당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참고로 자기 정보의 인터넷상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 도용,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등을 위해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 또는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지원합니다.

###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①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호 생략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8-3 SNS 계정 도용을 통한 성인물 게시

**Q** 제 SNS 계정으로 성인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누군가가 제 SNS 계정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A**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SNS를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자기 계정을 도용하는 방법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에 의한 SNS 계정 아이디·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 탈취, 개인이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성향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 계정정보 지득 후 SNS 로그인시 성공, PC방 등 공공장소의 PC 등을 사용시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정정보 노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SNS에서 타인이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 인터넷의 비대면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타인 행세를 하며 광고글 게시, 음란물 유포, 계정 삭제, 지인들에게 금전 요구 등 통해 계정 소유자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자기 계정을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우선 비밀번호 변경 절차를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SNS를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통해 도용자가 계정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SNS서비스사업자에게 계정도용신고 등을 통해 임시 사용 정지 조치 등을 취해 더 이상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용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경찰 등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NS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로그인 2단계 인증\* 설정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NS 로그인 2단계 인증 세부사항 등 SNS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은 KISA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http://www.i-privacy.kr))- 개인정보보호 -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 - SNS개인정보보호꿀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제3장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 제3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내 판례 등

2018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결 요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선고일)	사건명	주문(주요이유)
2017헌마747 (2018.4.26.)	기소유예처분 취소	피청구인이 2017. 6.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25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내지 이 사건 근거조항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한 기소유예처분)
2017헌마711 (2018.4.26.)	기소유예처분 취소	피청구인이 2017. 5. 25.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891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한 기소유예처분)
2012헌마191, 550(병합) 2014헌마357(병합) (2018.6.28.)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	통신비밀보호법(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016헌마263 (2018.8.30.)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2014헌마368 (2018.8.30.)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2. 20. 피청구인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사건번호 및 선고일	주요내용	판시사항
<p>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p>	<p>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및 제71조제5호에 대한 해석 관련</p>	<p>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p>
<p>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p>	<p>사이월드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p>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더라도 위법행위로 평가되거나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p> <p>③ 인터넷상에서 포털서비스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사고로 유출되었는데, 서비스 이용자인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개인정보 취급자로 하여금 작업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조치 의무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보호조치의 미이행과 해킹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갑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p>

사건번호 및 선고일	주요내용	판시사항
<p>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p>	<p>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p>	<p>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p> <p>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의미 / 위 규정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사용자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p> <p>③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p>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7-27-210호	2018. 1. 8.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04-025호	2018. 2. 12.	금융감독원의 보이스 피싱 전화번호 공개 및 제공에 관한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li> <li>2. 금융감독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를 악성 전화 및 문자를 차단해주는 앱 회사에 제공하고, 앱 회사가 '금융감독원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전화번호'임을 앱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탁에 의하여 가능하다.</li> </ol>
제2018-06-065호	2018. 3. 12.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선권고에 관한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에서는 자조금 단체(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대의원 선출자료) 파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p>그러나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만을 특별히「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유출 등 다양한 위반과 다르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10분의 1로 감경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p> <p>따라서 동법 제28조의2 및 제37조 제2항 제4호의3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파기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법 조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수범자에 따라 개별법에 달리 정하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도 있으므로, 동일 범주 동일대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p>
제2018-05-036호	2018. 3. 26.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0인 가구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소가 포함된 수급자격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li> <li>2.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권자 발굴 및 안내를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과 보험료,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대 가입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와 보험료가 포함된 건강보험 가입자격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li> </ol>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8-08-076호	2018. 4. 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현수막 불법 설치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관내 현수막 불법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의회 사무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주소를 제공받고, 이 주소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관내 거주 주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제2018-08-077호	2018. 5.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자 신원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2018-11-101호	2018. 5. 14.	예금보험기금 회수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국민연금공단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 제1항의 '부실관련자'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법원의 판결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국민연금 자격취득일, 기준소득월액 150만원 초과여부,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18-15-144호	2018. 7. 9.	법무부의 난민 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법무부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자녀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만6세 이상 만 17세 이하인 등록외국인의 공교육 진입 현황 파악과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하여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이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지역, 체류지 주소, 연락처를 교육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18-15-145호	2018. 7. 9.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건	교육부는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위하여 방문동거(F-1-52), 거주(F-2-2), 영주(F-5-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만 6세인 외국인 중도입국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국적, 체류 지역, 주소, 연락처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15-146호	2018. 7. 9.	경찰청 차적자료의 다른 수사기관 제공에 관한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찰청이 범칙금 부과 및 범죄수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차적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저장·보유·관리하는 등 차적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부처에게 경찰청의 차적 자료 처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li> <li>2.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검찰청, 국군기무사령부, 해양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차적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li> </ol>
제2018-14-133호	2018. 7. 23.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채무관계자의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급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8-16-164호	2018. 7. 2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선권고에 관한 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란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51조에 따른 복구비 선지급을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 하여 주(主) 생계수단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주(主) 생계수단 확인에 필요한 소득수준, 보험가입 유형 등에 관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제2018-17-174호	2018. 8. 27.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부산광역시는 ‘원격검침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내 만 60세 이상 1인 가구의 성명 또는 주소와 결합된 전기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
제2018-18-191호	2018. 8. 27.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실적공개를 위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인력의 정보 항목에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논문실적과 지식재산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2018-19-211호	2018. 9. 10.	고용노동부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집한 고용보험 가입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상실일, 고용보험 가입 직종·업종 코드와 주민등록번호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8-19-212호	2018. 9. 10.	인천광역시의 수도요금 할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을 안내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군· 구로부터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18-190호	2018. 10. 1.	사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1. 강원도는 119신고 접수 및 재난·재해· 구급상황 발생 시 도내 18개 시·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제공받아 소방본부 또는 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강원도 18개 시·군은 강원지방경찰청에 112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 및 범인의 도주경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 수집한 영상정보를 강원도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18-20-221호	2018. 10. 1.	퇴직공제제도 고지업무를 위한 행정안전부, 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피공제자와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피공제자의 주소정보,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소 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는 사망한 피공제자의 사망일시, 사망한 피공제자 유족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각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20-223호	2018. 10. 1.	한국조폐공사의 국회 안전심의를 위한 직원정보 제공에 관한 건	한국조폐공사는 국회의 안전심의(결산 심사)를 목적으로 국회에 세무·단위 사업의 담당 직원의 성명은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제공할 수 없다.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8-20-224호	2018. 10. 1.	국적 취득·상실자 정보의 관보 공개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	법무부는 「국적법」 제17조에 따라 국적 취득·상실자에 관한 정보를 관보에 고시 (이하 '관보 공개'라 한다)하고 있으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인 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을 보장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다. 1. 관보 공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재검토 하여, 필요시 등 공개제도의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 2. 관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정보 주체 권리 제한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개항목 또는 공개수준을 개선할 것
제2018-21-230호	2018. 10. 15.	울산광역시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제공 요청에 관한 건	울산광역시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울산 광역시가 재난관측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울산 광역시 관내 5개 구·군이 산림·방범· 교통·홍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각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21-231호	2018. 10. 15.	경기도 광명시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업무의 광명경찰서 위탁에 관한 건	경기도 광명시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광명 경찰서에 위탁할 수 없다.
제2018-22-245호	2018. 10. 29.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병적관리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병무청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복수 국적자인 병역의무자(18세~37세)의 외국 국적명, 대한민국·외국 성명, 대한민국 ·외국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8-22-246호	2018. 10. 29.	정읍경찰서의 회사 종업원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사가 제품 수리 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 종업원이 고객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에 악의적 댓글을 게시하는데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제한하는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li> <li>2. 회사 종업원의 제1항의 행위에 대해 회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과 제71조 제2호의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li> </ol>
제2018-22-247호	2018. 10. 29.	아산경찰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아산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산경찰서가 중요 강력범죄 및 실종 사건 발생 등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상황 종료시 까지 아산시로부터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표기한 디지털 지도와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li> <li>2. 아산경찰서가 아산시 내에 설치된 CCTV의 위치를 표기한 디지털 지도 화면에서 CCTV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li> </ol>
제2018-23-267호	2018. 11. 12.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 요청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자동차등록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된 자동차의 이동요청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018-23-268호	2018. 11. 12.	연금·보험급여 업무를 위한 경찰청의 교통사고 정보 제공에 관한 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연금보험급여의 관리 등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p>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급여 신청자의 교통사고 정보를 행정 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p> <p>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고 상대방의 교통사고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전산망을 활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p>
제2018-23-266호	2018. 11. 26.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한국마사회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건 신청인의 응시원서 사본을 포함한 답변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2018-24-287호	2018. 11. 26.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경기도 연천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근 군부대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제2018-24-288호	2018. 11. 26.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포천세무서는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 등록체류지,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현황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24-289호	2018. 11. 26.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국가보훈처는 6.25 무공훈장 미수령자 및 그 유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국방부(육군본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018-25-309호	2018. 12. 10.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충청남도 청양군은 방법용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수집한 유실물 습득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크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의안번호	의결연월일	의안명	주문
제2018-25-306호	2018. 12. 10.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채권회수를 위한 세무서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유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연체료 등 국가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세무서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제2018-25-308호	2018. 12. 10.	관세청의 총포류 불법반입 차단을 위한 경찰청 보유 총포류 소지허가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관세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총포류 소지 허가자 및 허가 취소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018-25-310호	2018. 12. 10.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 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018-26-324호	2018. 12. 24.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의정부시는 방법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행정 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사건번호	년월일	사건명	주요 내용
17진정1226800	2018.4.9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정보 공개	병무청장에게, 향후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에 있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 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권고.
16진정0320600·16 진정0320900 (병합)	2018. 5. 2.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시간외 근무 관리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 2. 인천광역시장에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는 경우 지문 등록에 동의를 받도록 할 것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의 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
17진정0650900	2018.5.2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피진정인에게, 법무부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인터넷 서신서비스’ 운영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17진정1175100	2018.7.26	의료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는 사진촬영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1. 의료행위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개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박한 응급상황이 존재하는 등



사건번호	년월일	사건명	주요 내용
			<p>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 휴대전화로 환자의 환부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p> <p>2. 관계 직원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관련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p>
18진정0367200	2018.8.29	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p>1. 개인별 체납 정보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p> <p>2.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p>
18진정0481400	2018.8.29	소속 공무원 징계사실 공람에 의한 인한 인권 침해	<p>OO청장에게 향후 징계대상자들의 징계 사실에 관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p>
	2018.12.27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p>국가인권위원회는 신원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p> <p>1.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 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p> <p>2.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용기관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임용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고도의 책임성, 보안성, 인적 신뢰성 등이 요구되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공직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p>

사건번호	년월일	사건명	주요 내용
			<p>3.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p> <p>4.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및 기타 신원조사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신원조사 수집 개인정보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바람.</p> <p>5. 신원조사 회보 종료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신원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 관리, 파기 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p>

본 사례집의 작성을 위하여 아래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총괄책임**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집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조사팀 차윤호 팀장  
김미현 책임연구원  
118 상담팀 강혜영 팀장  
전동진 선임연구원

##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

인쇄 2019년 4월

발행 2019년 4월

발행처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비매품〉

※ 본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